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43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2. 9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배치를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변경 :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
- 나. 위원회의 구성, 구성비율, 기능,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록 등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6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2. 8. 30 ~ 2012. 9. 19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은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며,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: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
2. 보육전문가 :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
3. 관계 공무원 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
4. 어린이집의 원장 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
5. 보육교사 대표 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공립어린이집의 설치,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
3.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
4.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, 보육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위원의 수당)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회의록)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촉기간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참고 1 상 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영유아보육법

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·사업·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, 2011.6.7>

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이하 "보육정책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은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6.7>

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